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서울) : 02-820-6908(성평등 상담) / 02-820-6909(인권 상담)

(안성) : 031-670-3163(성평등 및 인권 상담)

동아리연합회 하이라이트

@Design by. 태정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상담 가능한 외부기관>

여성긴급전화(24시간 운영) : 1366

해바라기 센터 서울대병원(서울) : 02-3672-0365

아주대병원(수원) : 031-215-1117

한국성폭력 상담소(평일 10:00~17:00) : 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평일 9:30~17:00) : 02-335-185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평일 10:00~17:00) : 02-2263-646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 : 1331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이란?]

-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학업 평가, 고용, 업무의 조건으로 삼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교수-학생, 고용주-피고용인, 상급자-하급자처럼 지위격차가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환경형(hostile work environment) 성희롱이란?]

-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육, 학습 환경, 고용 및 업무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학업성취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적대 적인 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경형 성희롱은 지위상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학과 동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 오늘날의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형법상 ‘성폭력 범죄’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1)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3)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의 판단 기준

[성적인 언동(예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고의적인 성적 접촉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통화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동아리 뒷풀이나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전화·문자, SNS, 팩스 등 포함)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성폭력 행위

-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데이트 폭력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그밖에도 앞에서 살펴본 조건형 성희롱 + 환경형 성희롱 +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여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차례 지속되는 행위가 아니었고 단일적인 행위일지라도 성적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당시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의 경우를 감 안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특정인을 염두 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 성희롱/성폭력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희롱/성폭력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입니다.

■ 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나의 몸과 성적 행동에 대해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성폭력이고, 나는 타인들로부터 나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

그러한 언행을 삼갈 것을 요구,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여 더 심각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위험을 차단합니다.

■ 자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누군가 나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성적인 접촉에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면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노동권, 학습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근절해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1.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

- ☞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 동아리를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중요)

■ 강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신속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바로 산부인과에 갑니다.
-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습니다.
-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날짜, 목격자나 증인 여부, 가해 당시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합니다.
- ☞ 피해 당시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응급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를 이용합니다.

[2.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원하는 해결 방법을 먼저 결정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

- ☞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
- ☞ 학내의 사건처리절차, 인권센터,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레드라이트,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 선택

[3. 증거의 수집]

- ① 행위자에 거부의사 밝힌다 (문자나 편지 등 내용 증명도 포함)
- ②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말할 수 있도록 준비
- ③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 ④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남

[4. 동아리 또는 학내 해결절차 이용]

■ 동아리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신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인권센터 또는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

■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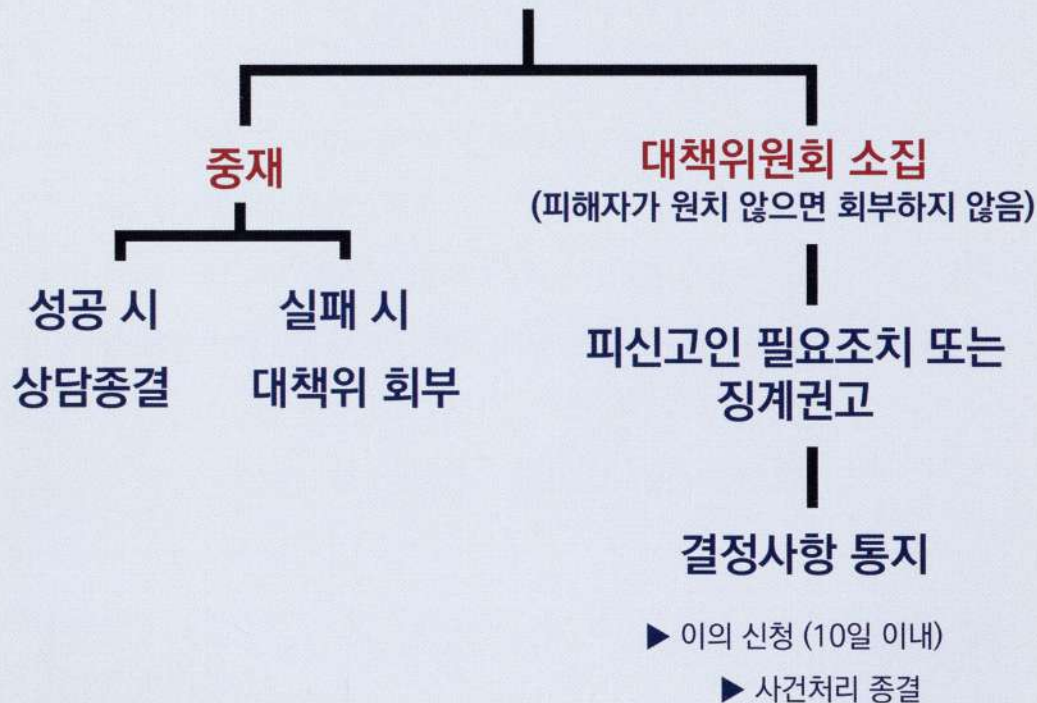
사건처리절차

[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정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8.23 개정)

상담 및 사건 처리 접수

-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 피해자 또는 대리인도 신고 가능



▶ 상담 장소 및 이용 시간(서울캠퍼스)

- 310관 (경영경제관 지하3층) B306호, 월~금 09:00~18:00
- 방학 중(단축근무 기관): 상담 10:00~16:00

▶ 상담 및 사건 접수

- 성평등 및 인권 전문연구원이 방문, 전화(02-820-6908), 이메일(chr119@cau.ac.kr)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내담자는 전문연구원에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

- 전문연구원이 상담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을 면담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 과정을 통해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인권센터에서 중재(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 합의서 작성 등)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중재로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사건 처리 내용과 합의 관련 문서는 상담 자료로서 인권센터에만 보관될 뿐,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 인권대책위원회 소집

-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 대책위원회에는 인권침해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분과위원회를 두며, 조사분과위원회는 조사분과위원장과 간사(센터 전문 연구원)를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됩니다.
- 대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여 학생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

(대책위원회의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청 및 필요조치 :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이나 2차 피해를 가한 사람 등에 대해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과 권고,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권고 : 환경형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신고 인이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결정사항 통지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대책위원회의 결정 및 구제조치에 대해서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사건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위원회 회부

- 동아리연합회실 방문
- 제 3자의 신고 등 타경로를 통한 직권조사 가능

중재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피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것)

- 피해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본회는 중재할 수 있다.
- 중재할 경우 본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요구조건을 피신고인에게 전달한다.

사건처리 절차

1. 당사자의 **일시적인** 동아리 활동 중지 단, 사건 종결 후 동아리 활동을 재개 가능
2. 피해자의 인권센터 방문 권고
3. 당사자,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
4. 당사자,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증거자료 제출 요구
5. 당사자,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동아리운영위원회 참석 요구
6. 피신고인의 징계 권고

결정사항 통지

- 이의 신청 10일 이내
- 사건 처리 종결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인식〉

- 성역할을 구분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성적 대상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삼갑니다.
- 서로의 성 정체성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소수자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방관하지 않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타인의 신체·외모에 대한 평가나 지적 및 사생활 침해 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합니다.